

주요국의 경쟁거제도 운영

본 협회 조사부

미 국

Octel사, Oboadler사 취득과 관련하여 FTC와 화해

Associated Octel Company Limited는 동 기업의 Oboadler Company Limited 취득이 경쟁을 감소시키고 내 폭제(내연기관의 노킹 방지제) 납화합물 가격을 인상시킬 가능성이 있어 연방 반트러스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연 방거래위원회(FTC)와의 화해에 합의하였다. FTC와의 화해 조건으로 Octel사는 Oboadler사의 현재 미국 내 유통업체와 장기계약을 맺어 미국 내에서의 재판매를 위한 당해 유통 업체의 내폭제 납화합물 소요량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FTC 경쟁국장인 William J. Baer는 "이번 화해로 경쟁적 가격이 유지되고 미국 내폭제 납화합물 소비자들이 보호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Octel사는 내폭제 납화합물을 포함하여 특수 화학물질 및 기능성 화학물질을 개발,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영국 런던에 소재하고 있다. Oboadler사는 내폭제 납화합물 을 제조 및 판매하는 3개 기업들, 즉 Alcor Chemie AG, Alcor Chemie Vertriebs AG 및 Novoktan GmbH를 지배하고 있고, 독일 Doberitz에 소재하고 있다.

내폭제 납화합물은 미국에서 피스톤 엔진 항공기 연료 및 경주용 자동차 연료에 첨가되는데, 전세계 사용량이 1970년 초반 이후 공중보건상의 우려로 상당히 감소하여 왔다.

당해 기소내용을 상세히 밝히고 있는 소장에 따르면 내 폭제 납화합물의 제조 및 판매시장은 고집중상태이며

Octel사와 Oboadler사는 세계에서 이를 제조하는 3개 업체 중 두 업체이다. 당해 제품에 대한 전세계 수요가 감소된 상태에서, Octel사의 Oboadler사 취득의 반경쟁적 효과를 저지하기에 시의적절하거나 충분한 시장진입은 이루어지 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당해 취득은 경쟁을 상당히 감소 시키고, 직접적 경쟁을 제거하며, 잔여 경쟁업체들간의 상호조정 가능성을 높이고 가격을 인상할 수 있게 되어 반트러스트법 위반이 된다.

FTC의 기소를 해결하기 위해 Octel사는 Oboadler사의 미국 내 유통업체인 Allchem Industries Inc.와 장기 공급계 약을 체결하여 미국 내 재판매를 위한 내폭제 납화합물에 대한 Allchem 사의 소요량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Allchem 사는 제품 재판매 고객의 선정 및 재판매의 내용, 조건을 결정할 유일한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당해 동의명령은 Octel사가 Allchem사에 대해 15년간 제품을 공급할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동 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당해 협정의 핵심적 조항을 변경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당해 화해 제안 인가를 위한 동 위원회의 표결 결과는 4-0의 찬성이었다.

■ '99. 9. 7, 미 FTC 발표

미 법무부, 비타민 담합에서 다케다사 등 3개 제약회사에 150억엔 벌금명령

미국 법무부는 9월 9일, 다케다(武田)약품공업, 에자이, 다이이치(第一)제약 등 3개사가 미국시장에서의 비타민 판매시에 반트러스트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이들 3개사 에 대하여 합계 1억3,700만달러(약 150억엔)의 벌금 지불

을 명령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다케다약품공업의 벌금액은 7,200만달러로서, 일본기업이 미국 당국에 지불한 벌금으로서는 사상 최대이다. 예자이사, 다이이치제약의 벌금은 각각 4,000만달러, 2,500만달러로서, 이들 3개사 모두 미국 반트러스트법 위반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지불에 동의하였다고 하였다.

동 부의 발표 및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BASF(독일), 로슈(스위스) 등 유럽기업과 함께 91년 전반부터 식료 및 음료에 첨가되는 비타민 B₂, B₆, C, E 등의 판매에 대하여 국제적인 담합에 근거한 카르텔 행위를 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가격인상 및 점유율 배분에 대하여 의논함으로써 미국 반트러스트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BASF사와 로슈사는 이미 합계 7억 2,500만 달러의 벌금지불에 동의한 상태이다.

다케다사의 벌금액은 쇼와덴코(昭和電工)의 미국법인인 「쇼와덴코 카본」이 1998년에 카본전극을 둘러싼 담합으로 명령받은 3,250만달러를 상회, 일본기업으로서 최대의 금액이 된다.

미국 법무부는 국제적인 담합의 적발을 강화할 방침으로, 비타민 담합 문제에 대하여서도 「조사를 계속하는 중」이라고 하였다. 이 문제에 관하여서는 미국의 식품 제조업체 각 회사가 적발된 의약품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거액의 화해금의 지불이 다음의 초점이 될 것이다.

■ '99. 9. 10, 일본경제신문

미 법무부, 프랑스 건설회사를 입찰조작으로 기소

미국 법무부는 9월 15일, 미국의 몇몇 현수교 건설사업에서 입찰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프랑스 건설회사인 Freyssinet et Cie사를 기소하였다.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제기된 중죄 형사사건에서,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은 Freyssinet사가 1996년 9월부터 1997년 9월 사이에 현수교 관련 부품 및 원자재의 설치, 제조 및 판매에 관하여 입찰을 조작함으로써 경쟁을 억압

및 배제하기로 다른 공급업체와 공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Freyssinet사와 다른 공급업체들은 몇몇 현수교 건설사업 계약을 자신들끼리 분배하기로 합의하고 이러한 합의에 따라 이들 건설사업에 대하여 인위적으로 고가로서 경쟁이 되지 않는 입찰서를 제출하였다.

현수교 건설은 특수건설의 한 형태로서, 현수교 도로는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에 연결된 강선에 의해 매달리게 하는 공법이다.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장인 Joel I. Klein은 “도로 및 교량 건설은 연방 및 주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법무부는 경쟁을 제약하고 미국 납세자를 사취하는 국제적 공모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추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Freyssinet사는 서면법 제1조 위반으로 소추되었으며, 이는 법인의 경우 최고 1,000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벌금은 당해 행위로 얻어진 이익의 2배액 또는 당해 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손실액의 2배액 중 어느 하나가 법정 벌금 최고액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까지 증액될 수 있다.

이 사건은 법무부 반트러스트국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FBI, 교통부 샌프란시스코 감사실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특수건설 산업에 대한 조사로부터 결과된 최초의 기소이다.

■ '99. 9. 15, 미 법무부 발표

텍사스 주와 카리브해 지역 잡지배급업체들, 담합 기소에서 유죄 인정

미국 법무부는 텍사스 주 Forth Worth와 버진아일랜드 St. Thomas에 소재하고 있는 2개의 잡지배급업체들이 잡지 및 정기간행물의 유통과 관련하여 고객 및 지역할당을 공모한 데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납부에 합의하였다고 9월 23일 발표하였다. 1999년 5월 17일에 제기되었던 이 형사사건의 재판은 같은 날 델러스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과거 Forth Worth에서 Trinity News Company Inc.란 회사명으로 활동하던 업체의 후신인 Rack Shop(DE) Inc.는 1990년 가을부터 1995년 하반기까지 텍사스 주 Dallas/Forth Worth, Waxahachie 및 주변지역에서 배급지역 및 고객을

할당하였다고 하여 기소되었으며, 동 회사는 75만달러의 벌금 납부에 합의하였다. 버진아일랜드 St. Thomas에 소재한 Island Periodicals L.L.C.는 1986년부터 1998년까지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및 기타 카리브해 도서지역에서 배급지역 및 고객을 할당하였다고 하여 기소되었으며, 동 회사는 25만 달러의 벌금 납부에 합의하였다.

이는 잡지배급업에 대하여 현재 진행중인 법무부의 조사의 결과로 제기된 두번째 및 세번째 기소이다.

때때로 독립적 배급업체(ID)로 불리는 잡지배급업체들은 출판사 및 전국적 배급업체로부터 잡지 및 정기간행물을 넘겨받아 Trinity News사와 같이 일반대중의 판매를 위해 이를 지역적 소매업체들에 배달하였다.

법무부는 또한 Rack Shop사와 Island Periodicals사가 거명되지 않은 다른 공모업체들과 함께 특정 ID가 특정 지역의 특정 소비자에게 잡지를 배달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하고, 또한 상호간에 각 ID의 지정 배급지역에 소재한 고객을 유인하지 않을 것에도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유죄 인정 합의의 일부로서, Trinity News사의 전 소유주이며 Island Periodicals사의 현 소유자인 Brian L. Weiner는 현재 진행중인 조사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장인 Joel I. Klein과 텍사스 주 법무장관인 Paul E. Coggins는 이러한 기소가 반트러스트국 클리블랜드 사무소가 델러스 검찰청의 도움을 받아 수행한 조사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1998년 5월, C&S News Agency Inc.는 텍사스 주 Dallas/Forth Worth와 Waxahachie 지역에서의 잡지 및 정기간행물 유통시에 지역 및 고객 할당을 공모한 데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8만달러의 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다.

Rack Shop사와 Island Periodicals사는 서면법 제1조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법인의 경우 최고 1,000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99. 9. 23, 미국 법무부 발표

**미국정부, 일본의 전기회사 입찰담합 소추
- 일본 독점금지법 제25조에 의한 최초의 제소 -**

미국 법무부는 일본의 대규모 전기회사인 (주)교와(協

和)엑시오가 1981년부터 1988년까지 일본에 있는 미국의 전기통신설비 운영·보수용역에 대한 입찰에서 담합을 하였다 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발표했다. 본건은 미 법무부가 일본의 독점금지법에 의거하여 청구한 최초의 사건이다.

데이비드 W. 오그덴 법무부 민사국장대행은 이번 소송이 동경고등법원에 제기되어, 25건의 전기통신 관련 계약과 20억엔, 약 1,9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해 계약은 동경 근처 요코다(横田) 공군기지에 있는 미국공군 「퍼시픽·콘트랙팅·오피스」와 경쟁입찰에 의거하여 체결된 것으로, 공군당국에 의한 입찰 과정에 대한 조사에서 담합한 사실이 밝혀졌다. 과거 10년 동안 미 법무부는 일본에서의 담합사건으로 7,2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냈다.

이번 소송은 일본 공정취인위원회가 「가부토회」라는 조직의 12개 회원사 중 하나인 (주)교와엑시오가 담합에 참가한 점을 인정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공정취인위원회는 1991년에 미국과의 계약에서 낙찰된 (주)교와엑시오를 포함한 「가부토회」 회원 3사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일에 있었는데, 이 때에 (주)교와엑시오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거부하고 수년간 쟁송을 하였으나 1994년 공정취인위원회는 동사의 주장을 거부, 과징금 납부를 정식심결하였다. (주)교와엑시오는 공취위 심결에 대하여 동경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6년 동경고등법원은 공취위의 심결을 지지하였다. 오그덴 국장대행에 따르면 상기 담합사건에 참가한 일본 전기회사 등은 1991년 미국정부와 3,400만달러에 화해하였고, 그외 10사는 1992년 2월 270만달러에 화해를 한 바 있다.

■ '99. 9. 29, 미 법무부 발표

**미 MCI월드컴 스프린트 인수
- 반독점법 위반 논란 -**

10월 5일 무선통신업체를 보유하지 못했던 미국내 2위의 장거리전화회사인 MCI월드컴이 벨사우스를 제치고 3위 업체인 스프린트를 1,290억달러에 인수키로 합의함에 따라

역사상 세계최대규모의 기업인수합병(M&A)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월드컴은 프린스턴의 개인휴대통신(PCS) 사업부문을 인수함으로써 장거리통신과 무선통신을 겸비한 종합통신업체로 부상하여 1위의 장거리통신업체인 AT&T의 아성을 위협하게 되었다.

스프린트는 미국내의 장거리전화통신망 외에도 미 전역의 이동통신망과 인터넷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간통신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MCI월드컴은 다양한 종합통신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MCI와 스프린트는 연방통신위(FCC)의 합병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FCC측은 시장경쟁위축여부, 시장의 집중화 초래여부 등을 점검하는 실사작업에 착수하고 있으며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의 권익에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미 정부의 반독점법 저촉 여부에 대한 심사와 2위업체와 3위업체의 합병 승인여부 등 최종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99. 10. 5, AFP연합

E U

유럽위원회, AlliedSignal사 · Honeywell사 기업결합 전면적 조사

유럽위원회는 AlliedSignal Inc.와 Honeywell Inc.의 기업결합 제안이 유럽 내 항공·전자공학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면서 이 제안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개시하였다.

관련 기업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동 위원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일축하면서 자신들은 15개국의 연합인 유럽연합 규제당국으로부터 최종적인 인가를 받을 것임을 확신한다며 "우리들은...동 위원회와 계속 업무협력중에 있으며 금년 가을에 당해 기업결합이 매듭지어지게끔 이에 대한 검토가 적시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럽위원회는 일상적 조사의 확대 이후 발표된 성명에서 "이들 기업들의 활동의 중복으로 말미암아 유럽 경제지역 내에서 한 분야 이상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형성의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특히 상업비행용 항공 전자공학 제품의 경우에 그러하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제 유럽연합 경쟁당국은 미국기업간 기업결합에 대한 최종적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4개월의 조사기간을 추가로 확보한 셈이다. 경쟁당국이 기업결합 및 취득을 전적으로 저지하는 일은 드물지만, 동 당국은 기업결합 인가의 대가로 자산매각과 같은 조건을 부과할 수는 있다.

■ '99. 8. 31, Los Angeles Times

프랑스 소매업체간 기업결합에 대해 반트러스트 조사 개시될 듯

프랑스 재무장관인 Dominique Strauss-Kahn은 9월 5일, 경쟁평의회에 대해 소매업체들인 까르푸와 Promodès간의 기업결합 계획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Strauss-Kahn 장관은 결합 결과 탄생할 기업이 일부 시의 슈퍼마켓 매출 부문에서 지나친 지배권을 갖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까르푸와 Promodès는 8월 31일 기업결합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 계획이 성사되면 월마트에 뒤이은 세계 제2위의 체인점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Strauss-Kahn 장관은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당해 기업결합의 결과에 대한 검토를 프랑스 경쟁당국에 요청할 계획이 있는냐는 질문에 "그렇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Strauss-Kahn 장관은 또한 유럽연합의 집행부격인 유럽 위원회에 당해 기업결합에 대한 어떠한 결정을 프랑스 정부가 내릴 것임을 양해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우리는 이 계획이 소비자 및 공급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고 이들을 보호하여야 한다. 어느 지역에서 독점 상태가 발생하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당해 기업결합의 조건들을 심사할 수 있다. 독점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 '99. 9. 6, The New York Times

영국 통산부 장관, BAe사 · Marconi사간 기업결합 조건부 인가

영국 통산산업부 장관인 Stephen Byers는 9월 9일, British Aerospace사가 General Electric Company의 방위산업 부문인 Marconi사를 74억 파운드에 취득하려는 계획에 대해 조건부로 이를 인가하였다.

관련 기업들은 당해 취득을 경쟁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John Bridgeman 공정거래청장의 권고를 Byers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이를 환영하였다.

그 대신 Byers 장관은 BAe사가 일부 군수계약 부문에서 경쟁이 계속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기업결합 이후의 영업에 관한 서약을 요구하였다. Byers 장관은 일정 사업부문이 매각되어야 한다고 특정하지는 않았다.

BAe사와 GEC는 “당해 기업결합이 금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이러한 서약의 요구가 충족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하였다.

지난 1월에 합의된 Marconi Electronic Systems을 취득하고 나면 BAe사는 방위산업 부문에서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에 이어 세계 2위의 업체가 될 것이다.

Byers 장관은 이러한 서약이 “경쟁위원회의 조사를 통하는 것보다 신속히 현안을 해결하는 한편 당해 기업결합이 가져올 이익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영국정부가 당해 기업결합을 전반적으로 지지한다는 사실은 이 기업결합이 영국의 방위산업을 강화하고, 전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주요한 방산업체를 탄생시키게 될 것이라는 Byers 장관의 논평을 통해 시사되었다.

그러나 그는 Marconi사의 조선부문과 항공전자공학부문은 분리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두 부문 모두 BAe사와 동등한 조건으로 다른 방산업체의 하도급업체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BAe사는 BAe사와 Marconi사 내에서 사업계약, 특히 Joint Strike Fighter 미국 전투기 사업, Tracer 정찰용 장갑차 사업 및 Skynet 군사위성 사업 등에서의 계약체결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부서들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이른바 “방화벽”을 세우도록 하였다.

유럽위원회는 당해 기업결합을 인가한 바 있다. Byers 장관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서약을 제출하는 외에 이들 기업은 미국 규제당국 및 주주들로부터의 승인도 필요로 한다.

Byers 장관은 2월 9일을 시한으로 설정하였는데, 이 기한이 지나면 그는 당해 기업결합 계획을 경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99. 9. 10, Financial Times

유럽위원회, Airtours사의 First Choice사 취득 저지

유럽위원회는 9월 24일, 9억5,000만파운드(15억 3,000만 달러) 규모로 휴가 패키지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First Choice사를 취득하겠다는 Airtours사의 제안을 저지하였는데, 이는 경쟁법 전문 법률가들로부터 이 부문의 다른 기업결합도 인가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를 야기하였다.

유럽위원회의 새로운 경쟁 담당위원인 Mario Monti는 이 제안이 실행되면 Airtours/First Choice, 그리고 주요 경쟁사인 Thomson사와 Thomas Cook사가 영국 여가 여행 부문에서 “집단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저지하였다.

동 위원회는 Gencor사와 Lonrho사의 백금 사업부문간 기업결합을 저지할 때에도 유사한 논거를 사용하였지만, 그 사건은 당해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면 두 기업에 한 원자재 시장 전체의 지배권이 부여되는 경우가 된다. Airtours사의 기업결합 제안은, 만일 성사되었다면 보다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에서 3개 기업이 전부 합쳐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는 결과가 되었을 것이다.

First Choice사의 자문을 맡았던 영국 법무법인인 Herbert Smith의 Elizabeth McKnight는 “명백히 이는 다른 수많은 기업결합이 저지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Airtours사의 자문을 맡았던 영국 법무법인인 Slaughter & May의 Mark Nicholson은 예전 같으면 유럽위원회의 경쟁 관련 심사를 통과하였을 기업결합들도 이제는 인가를 얻기가 힘이 들 수도 있다면서 “이는 점점갈수록 말해 상당한 규

제장벽의 복귀이다.”라고 말하였다.

Airtours사의 회장인 David Crossland는 “동 위원회는 기업 각자의 시장지배력을 측정하는 대신, 3개 기업만이 존재할 경우 이들은 경쟁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영국 패키지 여행상품 산업과 같은 역동적인 산업과 관련하여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라며 동 기업은 항소를 고려중이라고 하였다.

First Choice사의 회장인 Ian Clubb은 “처음부터 나는 당해 기업결합이 성사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 회사의 전문가들은 규제당국과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들이 옳았음이 입증되었다.”면서 당해 결정을 환영하였다.

이 결정은 또한 독립적 관광사업자 협회로부터도 환영을 받았는데, 이 협회는 영국 내 당해 산업에서 추가적인 결합이 있을 경우 회원사들은 시장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동 위원회는 당해 제안으로 인해 근거리 관광사업 시장의 80%를 지배하는 3개의 수직적 통합 기업들이 당해 산업을 지배하는 결과가 야기될 것이므로 이를 저지하였다고 하였다.

이들 기업은 전세항공편을 운영하고 패키지 여행을 조직하며 여행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격인상을 위해 공급능력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

■ '99. 9. 25, Financial Times

일본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98년도에 31억엔 과징금 부과

일본공정취인위원회는 '98년도에 17개 사건에 총 31억 4915만엔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법위반 조문별로 보면 제3조 위반이 14건(총 372사업자), 제8조제1항제1호 위반이 3건(총 204사업자)이며, 내용별로 보면 수주예정자 사전결정사건이 15건, 가격카르텔 사건이 2건이었다. 사업

자당 과징금 규모를 보면 최고 2억1716만엔, 평균 547만엔이다. 법규위반별 평균 과징금액은 제3조 위반이 701만엔, 제8조제1항제1호 위반이 266만엔이고, 대상사업자별로는 제조업 4926만엔, 건설업 492만엔, 도매업 797만엔, 소매업 52만엔이었다.

과징금액은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기간에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용역의 판매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6%(소매업 2%, 도매업 1%)를, 일정규모 이하의 회사나 개인에 대해서는 3%(도·소매업 1%)를 곱한 금액에서 1만엔 미만의 끝수를 버리고 산정하며 산정금액이 50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를 명할 수 없다.

공정취인위원회는 사건심사 결과 과징금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통상은 위반행위의 배제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할 뜻을 권고하고, 관계인이 권고를 응낙했을 때는 이 취지의 심결(권고심결)에 따라, 응낙하지 않을 때는 심판을 거쳐 심판심결 또는 동의심결에 따라 위반행위의 배제를 명한 후,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게 된다.

[참고] 과징금제도의 연도별 운용상황

연 도	사건수	납부명령수 (대상사업자수)	과징금액 (만엔)
1977년	0	0	0
1978년	1	4	507
1979년	5	134	157,174
1980년	12	203	133,111
1981년	6	148	373,020
1982년	8	166	48,354
1983년	10	93	149,257
1984년	2	5	35,310
1985년	4	38	40,747
1986년	4	32	27,554
1987년	6	54	14,758
1988년	3	84	41,899
1989년	6	54	80,349
1990년	11	175	1,256,214
1991년	10	101	197,169
1992년	17	135	268,157
1993년	21	406	355,321
1994년	26	512	566,829
1995년	24	741	644,640
1996년	14	368	748,616
1997년	16	369	283,289
1998년	16	576	314,915

■ '99. 7, 공정취인